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0 - 72호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PP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등을 담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취 지

방송법 제9조제5항에 의거, 신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PP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등을 담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안)」에 대해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 별첨 참조

3. 의견 제출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일로부터 20일(2010년 9월 6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보내실 곳 : (110-777) 서울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채널정책과 담당자

4.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채널정책과 (☎ 02-750-1254)